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907 조합원 징계무효확인

원 고 1. 김석균

2. 이원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이승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5. 1. 7.

주 문





1. 피고가 2014. 1. 22. 원고 김석균에 대하여 한 정권 18개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이 원준에 대하여 한 정권 12개월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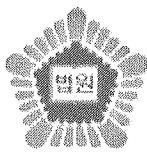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38,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김석균은 피고의 서울 강남지방본부 반포지부 소속 조합원(1995. 4. 6. 가입)이고, 원고 이원준은 피고의 서울 강북지방본부 은평지부 소속 조합원(1999. 1. 7. 가입)이다. 또한 원고 김석균과 이원준은 피고와 별개의 케이티 협장 조직인 케이티 전국민주동지회의 의장 및 회원이기도 하다.

다. 피고는 2014. 1. 20.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각 '징계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 김석균에 대하여는 조합 비방행위, 조직질서 문란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18개월, 원고 이월준에 대하여는 조합 비방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1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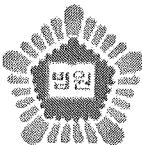
- ① 본 조합의 규약, 규정과 각종 회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④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본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73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원이 각종 매체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한 자
4. 규약상의 조합원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
5. 조합비, 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6.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로 선거를 방해한 자
7. 외부의 사주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자

제74조(징계의 종류)



- ① 정직(1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는 있으나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정권(2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한다.
- ③ 제명,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영구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제75조(징계기관)

- ① 조합원의 징계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제명의 경우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만 가능하다.
- 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조합의 위상을 침각하게 해손하는 등 비위가 중할 경우 전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3월 이내의 정직에 한한다.
- ③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별규정에 의한다.

제76조(재심청구)

- ①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이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시행하며, 재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원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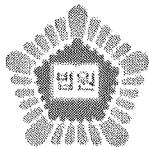
[상별규정]

제11조(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 ① 징계요구자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징계기준(별표1)에 의한다.
- ③ 징계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중한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규약 제74조(징계의 종류)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1(징계기준)

징계사유	요구기준		
	제명	정권	정직
2. 공통부문			
2) 조합 비방 발언행위	고의	고의	
3) 조직질서 문란행위	고의	고의	과실
4) 유언비어 행위		고의	
14)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과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 10,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케이티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며 노동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비판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비방행위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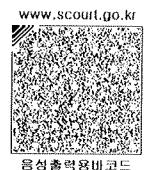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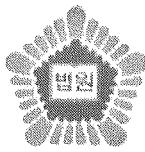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비방행위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2,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3. 5. 9.에 열린 2013년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케이티 사용자 측에게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백지위임한 사실, ② 2013. 5. 21. 체결된 2013년 단체교섭 가협약(안)에서 케이티 사용자 측과 피고는 2013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평가만으로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의 면직조항을 신설한 사실(인사평가등급 중 업무실적이 2년 연속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고, 2회 이상 대기발령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면직이 가능하도록 함), ③ 위 단체교섭 가협약(안)은 2013. 5. 24. 실시된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고 한다) 결과 피고 소속 조합원 82.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2013. 6. 17. 전남 광양지사의 조합원 김성현은 이 사





건 찬반투표 과정에 케이티의 사용자 측이 부당하게 개입,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하였다면서 위 찬성률은 케이티의 노동탄압 결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④ 피고는 2011. 12. 22. 케이티 전(前) 회장 이석채의 연임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2. 2. 3. 고용노동부의 케이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한 편향적 조사라면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위 특별근로감독결과 2012. 5. 10. 이석채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케이티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하였다), 2013. 8. 30.에는 배임 등의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회장직 사퇴 요구를 받은 이석채를 옹호하면서 케이티의 사용자 측 입장을 반영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2. 12월경부터 2013. 10월경까지 전국민주동지회 소식지인 '민주통신'(김성현의 죽음 직후 발행된 5개 소식지에는 열사투쟁소식지라는 표현을 병기하고 있음, 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고 한다)을 발행 및 배포하고, 국회의사당 앞, 청계광장, 케이티 사옥 앞, 불광역 등지에서 케이티의 사용자와 피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사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식지 및 옥외 집회를 통하여 케이티에게 이 사건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 및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채 케이티의 사용자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조합 내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케이티의 사용자 측에 서서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⑦ 이 사건 소식지는 케이티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악화, 피고에 대한 케이티 사용자의 부당개입 등 사용자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더하여, ⑧ 피고는 원고 김석균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를 비방하였다면서 원고 김석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29. 원고 김석균의 위 행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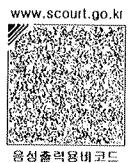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⑨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합원들의 독자적 조직 및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⑩ 또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그 다양성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독자적 조직 및 활동을 통한 조합 집행부 비판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점, ⑪ 피고의 규약 제10조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비록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이나 옥외 집회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어용노조, 식물노조, 앞잡이 등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우호적 태도를 알리고, 피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하여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들의 생존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함으로써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비방행위는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협의사실 유포의 점

다음으로 원고들의 협의사실 유포행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식지에서 이 사건 찬반투표가 케이티 사용자 측의 개입으로 조작되는 등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에 사용자 측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러한 불법 투표에 연계되어 있다고 기재한 사실, 또한 김성현의





자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위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케이티의 사용자 측에 협조하고 있고, 아래 (다)항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기 위하여 케이티 사용자의 개입 하에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규약 제73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 김석균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조직질서 문란의 점
마지막으로 원고 김석균이 이 사건 소식지를 문자메시지로 무단 발송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케이티 소속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사내 전산망에서 모든 직원들의 성명, 소속,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개된 신상정보에는 케이티 직원 누구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실, ② 원고 김석균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소식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이 사건 소식지 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던 사실, ③ 위 문자메시지는 케이티 사내망을 이용하여 월 1회에 한하여 발송된 사실, ④ 원고 김석균은 직원들의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조회한 휴대전화번호를 위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더하여, ⑤ 노동조합 내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독자적 조직 및 활동을 통한 조합 집행부 비판도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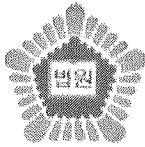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점, ⑥ 원고 김석균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 자체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그 열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소식지가 게재된 홈페이지의 주소만을 보낸 점, ⑦ 이 사건 규약에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소식지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⑧ 원고 김석균이 피고로부터 발송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조합의 조직질서가 와해되거나 약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석균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사용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그 보호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전송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조직질서 문란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규약 제7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나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이 사건 규약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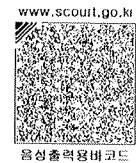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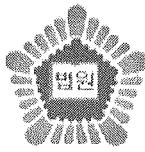
노동조합에게는 규약이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 하에 정직, 정권,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되나, 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 보장은 조합 활동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고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사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인 정권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갖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침해 정도가 크고, 그 기간도 각 18개월, 12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③ 원고들은 종전에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는 처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원고들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소식지나 원고들의 대외활동 중 문제된 내용들은 주로 케이티의 사용자에 대하여 김성현의 죽음 및 유서 내용에 근거, 이 사건 찬반투표 및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 당시 사용자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행위의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는 2013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소극적 태도, 케이티 사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견제·감시기능을 회복하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서, 단지 피고를 비방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⑤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규약에서도 모든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기광섭



판사

이이영

이이영



판사

윤지영

윤지영





별지

원고 김석균에 대한 징계이유

본 중앙위원회는 위 혐의자에 대한 “조합비방 행위”, “조직질서 문란행위”, “유언비어 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1. 조합 비방행위

혐의자는 우리 “KT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우리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임의 조직인 “민주동지회” 의장직에 있으면서 우리 노동조합에 어떠한 사전 승인요청도 없이 당해 조직의 홍보지로 보이는 “민주통신”, “열사투쟁소식지”를 통해 우리 KT노동조합을 “식물노조”, “어용노조”라고 하거나, “어용노조 퇴진” 등을 주장하고, “회사와 결탁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비난행위를 계속해 왔음.

또한, 외부 일반 대중이 접하는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우리 조합이 공정하게 진행한 임단협 투표에 대해 사측과 “노사야합” 했다고 윤운하면서 편파하거나, “상시해고제 도입에 합의했다”, “어용노조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 조합을 비난하였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부인이 왕래하는 청계광장, 국회, 계룡산 등산로 등지나, 광화문사옥, 반포사옥, 신촌사옥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어용노조 퇴진”,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정윤모는 퇴진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피켓, 플랫카드를 통해 1인시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조합을 비난하여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시켰음.

2. 조직질서 문란행위



우리 조합의 사전승인 없는 임의 홍보지, 소식지를 우리 조합원들에게 문자 서비스로 무단 발송하였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조합 차원의 조직 결의에 의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정보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반송시킨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함.

이에 더해, 홍보지, 피켓, 플랫카드, 집회발언을 통해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주장에게 “사측 앞잡이”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써가며 대내 외적으로 무차별적 비난 행위를 한 것 또한 KT노조 조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함.

3. 허위사실 유포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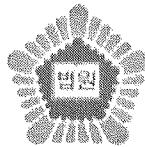
협의자는 홍보지 또는 1인시위, 집회, 언론인터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 선거 관련한 사측의 “투표함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우리노조가 불법, 부정 선거와 연계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우리 조합을 펜하하였고, 광양지부 조합원 자살사건과 관련해서도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단체 차원에서의 조합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사건은폐를 위해 사측에 협조했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 그 밖에도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관련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 조합이 “상시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전혀 근거없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우리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음.

4.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협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조합 비난행위 등과 관련된 상기 내용들은 우리 KT노동조합의 공신력과, 명예, 위신을 현격히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함.

위와 같이 정계요구 사유들은 모두 우리 조합규약, 규정에 따른 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히 실추시킨 것이 분명하여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됨. 특히, 협의자의 경우 이러한 민주동지회 차원의 조직적 반조합 행위를 주도, 실행한 수장의 지위에 있고 반성의 의사도 없는 점이 확인되어 그 책임이 더욱 커 중징계가 마땅하나,

이전 정계이력이 없다는 점과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적극 노력하는 차원에서 금번 한 애초 정계의결요구서 상 보다 감경된 정권 18개월로 의결함.



별지

원고 이원준에 대한 징계이유

본 중앙위원회는 위 협의자에 대한 “조합비방 행위”, “유언비어 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함.

1. 조합 비방행위

협의자는 “KT노동조합의 조합원”신분으로서 마땅히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임의단체인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외부인들이 접하는 언론매체 기고문을 통해 “kt노조”가 “죽음의 행렬의 종범이므로 쫓겨 날 대상이다”, “kt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어용노조 동반퇴진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등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런 구체적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우리 조합을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의 아무런 승인도 없었던 민주동지회 홍보지로 보이는 “민주통신”, “열사투쟁소식지” 배포를 통해 우리 조합을 “식물노조”, “어용노조”, “회사와 결탁했다”라고 허무맹랑한 비난을 하거나, “어용노조 퇴진” 등을 주장하는 행위에 적극 주도, 동참하였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부인이 왕래하는 청계광장, 국회, 계룡산 등산로나, 광화문사옥, 반포사옥, 신촌사옥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어용노조 퇴진”,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정윤모는 퇴진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피켓, 플랫카드를 통해 1인시위,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조합을 비난하여 조합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음.

2. 혀위사실 유포행위

협의자는 홍보지 또는 1인시위, 집회 등 여러 방식으로 우리 노동조합 투표와 관련해 “투표함 조작” 등을 언급하며 아무런 구체적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치 우리 조합이 부정투표로 점철된 것처럼 혀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광양지부 조합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사건 은폐를 위해 사측에 협조했다”, 개인정보 삭제요청 건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개입했다”, “KT노조가 상시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라는 등 아무런 구체적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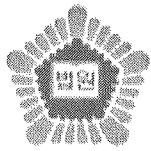
특히, 혐의자는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임단협 투표에 회사가 개입 한다”, “반대표를 찍으면 누가 찍었는지 다 알고”라면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치 우리 조합이 공정하게 실시한 임단협 찬반투표가 사측에 의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조합을 폄하하였고, “이 런걸 막아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런 기대를 할 테가 없으니까 자살까지 하는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조합의 위신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음.

4.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혐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조합 비난행위 등과 관련된 위의 내용들은 우리 조합의 공신력과, 명예,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함.

위와 같이 징계요구 사유들은 모두 우리 조합규약,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히 실추시킨 것으로 고의성이 분명함. 특히, 혐의자의 경우 혐의자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민주동지회 차원의 조직적 반조합 행위에 적극적으로 주도 또는 참여하였고,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음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더욱 커 중징계가 불가피 하나,

이전 징계이력이 없다는 점과 앞선 동일사유 혐의자 의결파의 행평성,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적극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번 한 징계의결요구 보다 감경한 정권 12개월로 의결함.



정본입니다.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주사보 김선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
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